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 모범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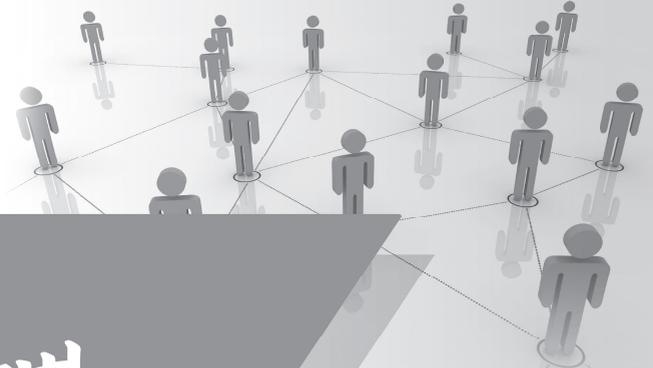
2023.05



FAIR TRADE COMMISSION

“본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민원인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축산계열화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사업자들이 축산물 판매가격을 축산 품질평가원 시스템에 입력·보고하는 행위가 이른바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3. 어떠한 행위가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여 위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간 정보의 ‘교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자가 관련 법령상 의무에 따라 시스템에 판매가격을 입력하는 행위가 사업자 간 정보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입력·보고 행위가 정보교환 담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 또한, 위 입력·보고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8조에 의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축산물 판매가격 보고 행위는 축산계열화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법률이 명확하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판매가격 입력·보고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5. 귀하께서는 위 입력·보고 행위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도 질의하셨는데, 축산계열화사업법 제32조의2에는 그러한 협의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출고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판매가격 입력·보고 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협의 의무는 없습니다.
6. 상기 답변과는 별도로, 사업자들이 축산계열화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입력·보고 외에 상호 간에 판매가격 등을 교환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교환 담합 금지규정에 저촉되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7.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12-055743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하도급률이 낮으면 저가 하도급으로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하도급업자의 하도급 금액 한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의하신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원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금지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률, 적정성 심사대상, 하도급업자의 하도급 금액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힘들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5.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귀 민원의 처리 담당 부처로 동시에 지정된 국토교통부의 민원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 드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업거래정책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201-0154744) 중 공산품 광고에 관한 문의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에 해당하여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산품 관련 표시광고법상 질의에 답변드리며, 나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답변하게 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칫솔에 ‘당뇨환자, 임산부, 구강질환 환자를 위한 부드러운 칫솔모’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공정위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 음 -

- 1) 우선 표시광고법은 상품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방법을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가 실시되고 난 이후 사후적으로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거짓과장광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거짓 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표시나 광고가 사후적으로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이 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답변은 귀하께서 판매예정인 상품의 표시나 광고의 적법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영위하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상의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것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 3) 또한,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표시·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



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판매 예정 제품이 ‘당뇨환자, 임산부, 구강질환 환자에게 좋다’는 표현에 대해 귀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실증가능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다면 이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참고로 실증자료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실증방법이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하며, ②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③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외에도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등에 여러 예시가 실려있으니, 광고 기획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국가가 각 호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별도의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자께서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부처 처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또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www.karb.or.kr, 민간기구)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사전자율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 기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표시광고법 등 각종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위 답변내용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본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일 금 삼십만원씩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는 약정을 가맹계약조건으로 설정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제5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관련 법규정

□ 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3.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법 제1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행위’라 함)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① 계약의 목적과 내용, ②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③ 당사자 간 귀책 사유 유무 및 정도, ④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행위’에는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전가행위’,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행위’가 해당되며,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4.가. 내지 라.).

4. 한편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의 위법성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가맹사업상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함

** '우려'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하며,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함.

다만,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와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 등을 비교형량하여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는 사안별로 대상 가맹본부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절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되며, 단편적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단정하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경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2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화물운수사업을 영위하는 귀사가 공공기관 수송용역(하도급을 불허하는 입찰조건)을 수행하면서 타업체에게 배차업무 만을 위탁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13항 제2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을 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주선)업에 종사하면서, 화물운송에 따른 배차업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였고, 배차업무가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면 하도급법이 규정하는 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위탁한 화물운송의 배차업무가 상기의 요건을 결여하여 하도급법이 규정 하는 용역위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하도급은 귀사가 도급받은 업무(수송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도급하는 행위로 아주 넓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도급계약 내용 중 일부인 배차업무는 발주자가 금지하는 하도급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명시한 ‘하도급 불허’ 규정에 위반하여 귀사가 하도급거래를 한다면 발주자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가 명시한 입찰조건 중 허용되지 아니하는 하도급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발주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본 답변은 귀사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식회사 마블건축(대표이사 김도경, 이하 ‘피민원인’이라 함)이 2021. 11. 5. 서준성님(이하 ‘도급인’)과 계약금액 29,000천 원에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타일공사(견적서상 2,700천 원 상당)와 관련하여 1,2차 컨셉 미팅 때 도급인과 스타일을 협의하고 도급인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타일 정보를 피민원인에게 명확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은 도급인이 선택한 것과는 전혀 다른 타일을 사용하고 벽면 타일공사도 임의로 누락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하여 도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②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서 계약내역 변경에 따른 사후 정산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지 않고, 견적서 내용을 불분명하게 작성하는 등 부당한 내용의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③ 도급인으로부터 하여금 2021. 11. 1. 계약 예정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미리 입금하게 함으로써 영업 비용을 전가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 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제공’이라는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의 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정은 사업자 간 모든 거래에 적용되지는 아니하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서 법상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거래상 지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양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와 관련한 계약서 등 규정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특히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 법률상 책임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 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절차 등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상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거래관계(상대방과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가 존재하는지 여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통상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판단함)가 상당한지 여부와 함께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위 민원 내용 ① 및 ③에 대해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우선적으로 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민원인의 법상 거래상지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해당 거래관계에서 도급인 서준성님은 피민원인의 고객으로서 피민원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자이며, 실내건축사업자인 피민원인과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투자가 이루어졌거나 피민원인에 대하여 매출을 의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상 거래상지위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위 법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한편, 위 민원 내용 ②와 관련하여, 피민원인이 고객과의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계약내용 중 특정 조항 자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 대상 약관조항에 대해 불공정한 사유를 명확하게 구체적 근거를 적시하여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피민원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공시한 실내건축 표준계약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공정거래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6. 귀하의 민원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24GYM(이하 ‘피민원인’이라 함)이 발송한 광고성 문자에 4개월(3+1) 이용요금이 9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방문 결제시 99,000원을 받고 있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민원인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명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표시광고법 규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후 피민원인이 광고를 자진해서 수정(부가가치세 별도 사항 명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는 피민원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5. 우리 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나 모든 광고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관심으로 인해 광고를 시정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동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AA-2201-0793568) 중 공산품 광고에 관한 문의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항에 해당하여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공산품 관련 표시광고법상 질의에 답변드리며, 나머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답변하게 됩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자외선 칫솔 살균기 광고에 해당 제품을 사용한 어느 한 치과 의료진의 후기 및 추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공정위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다 음 -

- 1) 우선 표시광고법은 상품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방법을 사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가 실시되고 난 이후 사후적으로 사업자의 표시광고가 거짓과장광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제품의 표시광고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표시나 광고가 사후적으로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이 정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답변은 귀하께서 판매예정인 상품의 표시나 광고의 적법성을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께서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영위하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상의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여 표시·광고하는 것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 3) 또한,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12. 추천, 권장 등에 관한 표시·광고에서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등에 대한 추천, 권장 등의



사실을 표시·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거나 모호하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전문가, 연구기관, 유명단체에 의한 추천, 권장, 수상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나.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당해 부문 전문가의 추천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4) 따라서 자외선 칫솔 살균기에 대하여 추천한 해당 의료진 전문가가 당해 상품에 관하여 실제로 시험, 조사, 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범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참고로 실증자료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실증방법이 시험결과, 조사결과, 전문가(단체/기관)의 견해, 학술문헌, 기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하며, ②실증자료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③실증자료의 내용이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게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외에도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에 여러 예시가 실려있으니, 광고 기획에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소비자기본법」 제10조는 국가가 각 호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별법에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별도의 표시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업자께서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표시기준을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오인광고, 의료기기법 등에 대하여서는 다부처 처리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6. 또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www.karb.or.kr, 민간기구)에서는 광고물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위 기구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표시광고법 등 각종 관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서비스이므로 이를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7. 위 답변내용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3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세요.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1AA-2203-031457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 공급업자(본사)가 현재 거래 중인 대리점들 가운데 거래 형태가 위탁판매(위탁대리점)에 해당하는 곳들을 대상으로, 공급업자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업 정책(이하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앞서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부여(유예조치) 하거나 또는 각 대리점과 합의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한지,
 - ㉡ 또한, 거래 형태가 재판매(소유권이 대리점으로 이전)에 해당하는 곳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법률 가운데, 귀하의 민원 내용과 관련있는 것으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중 대리점거래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보다 직접적인 규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검토 결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 대리점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시중에서 일정한 거래 형태를 두고 상품을 공급하는 쪽을 '본사', 상품을 공급 받아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쪽을 '대리점' 등으로 지칭하기도 하나, 그와 별개로 대리점법이 적용되는 대리점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공급업자(본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대리점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5.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거래의 각 당사자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하에서는 요건을 충족하여 귀하가 언급하신 각 당사자에게 대리점법이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아래 6. ~ 9.의 답변은 귀하의 민원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이하 ‘경영활동 간섭 행위’),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호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중 하나로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법 상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7. 한편,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48호, 이하 ‘심사지침’) III. 2.,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시장점유율, 매출액, 자산총액 등)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를 고려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이하 ‘부당성’) 여부는 △공급업자의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였는지 등),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8. 지금까지 내용에 비추어 귀하의 민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대리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은 대리점거래의 형태(위탁판매/재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의 내용은 모든 대리점과의 거래에 적용된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급업자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행위의 외형은 일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정책은 대리점이 상대하는 거래상대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한 뒤, 온라인의 상대방과는 거래(판매)를 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중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 등을 정하고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급업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외형 외에도,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민원 내용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사업능력 격차, 대리점의 거래의존도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어 적절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공급업자의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했는지, 공급업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리점이 예측가능했는지, 그 행위로 인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경제상의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이 곤란해지는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고 행위에 합리성이 있는지도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 역시 이번 민원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위의 합리성 부분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자면 만약 공급업자가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하려는 목적이 그 정책을 통해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상품의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면, 이를 두고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9. 한편, 귀하께서 언급하신 ‘유예조치’, ‘대리점과의 합의를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유예조치’를 언급한 취지는 공급업자가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일정 기간(6개월 ~ 1년) 유예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리점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사업활동 제한 등을 대비할 기간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급업자가 일정 기간 유예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각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조건에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계약기간 중 거래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대리점들이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공급업자가 향후 그러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예조치를 통해 대리점들에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대비할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불이익 등을 일부 경감시켜주려 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발생할 불이익 등을 상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공급업자가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의 시행을 준비하면서 일정 기간 유예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한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귀하께서 ‘대리점과의 합의를 작성하는 행위’를 언급한 취지는 공급업자가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대리점들로부터 동의를 받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공급업자의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 행위가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합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리점이 정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인지, 공급업자가 부적절한 방식을 동원하여 합의서



작성을 중용하거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형식적으로 합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 정책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받았다고 하여,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끝으로 귀하의 민원 내용을 공정거래법에 따라 검토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특정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앞서 살펴본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와 외형이 유사하나, 규제의 취지 및 위법성 판단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점법 상에서는 공급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주로 살펴보는 것에 비해, 공정거래법 상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특정 사업자의 행위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 사업자들 간 경쟁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11. 이번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대리점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리점법 위반 소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답변드렸습니다. 만약 귀하가 언급하신 당사자 등이 위 4.의 대리점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추가로 문의주시면 우리 위원회의 관련 부서에서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 위 답변 내용은 귀하가 기재한 민원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대리점거래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 내용은, ① 수협중앙회가 외국인 선원관리업체 선정 시장에서 대리점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자의적인 평가방법과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대리점들에게 선원배정 쿼터를 적게 줌으로써 기존에 대리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② 수협중앙회가 4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선원배정시 4개의 자회사들은 평가를 하지 않고 선원배정쿼터를 주는 방식으로 4개 자회사에게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위 ①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수협중앙회는 외국인선원 관리업체 모집 공고시에 일정한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면서 해운법 등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해운법 등의 법령에서 입찰요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공개경쟁과 관련된 평가방식과 추가 대리점 선정 등 사업자는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위 ②의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5. 다만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수협중앙회의 4개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에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공정거래법은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고 각각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규제가 가능하여 원하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귀하의 고충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알투디(이하 '피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1AA-2202-0747920 민원의 보완요청 답변에 대한 회신으로 확인되어,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추가검토를 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와 피조사인은 서로의 의사를 합치하여 총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물품 가격에 대한 합의사항을 총판대리점계약서 제4조 가격조항에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조사인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물품 가격을 설정하였고 귀하에게 구매를 강제하여 피해를 입힘

(2) 피민원인이 물품의 납품일자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귀하에게 피해를 입힘.

(3) 거래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비용납부를 강요함.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경쟁질서 위반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으로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1) 행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나, (2) 소비자의 피해구제 관련 사항인 경우, (3) 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인 경우, (4) 타 법의 적용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5) 사업자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효과가 미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1)에 대한 검토결과, 먼저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총판계약서 제2조의 제품명과 제4조 가격 조항의 문언이 포괄적이거나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당 문언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양 당사자가 서로 의사를 합의하여 그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및 약정서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처분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 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서의 조항이 법률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면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사적구제절차인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설령, 계약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없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남용 조항을 검토해보더라도 피민원인의 거래상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민원에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 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어 투자의 고착화(lock-in)현상이 발생하면서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특화된 설비의 전환이 곤란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해당 거래처가 귀하의 사업을 유지하는데 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사업의 계속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우려되어 거래 상대방이 이미 투입한 투자나 예상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귀하께서는 그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원을 살펴본 결과, 귀하께서 피민원인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인건비, 운반비용 등으로 오로지 피민원인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고착화된 비용인 고정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가변비용이므로 투자의존도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알려드립니다.

민원(2)에 대한 검토결과, 피민원인의 납품일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해당 사안 또한 손해배상 등 사적구제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원(3)에 대한 검토결과, 귀하께서 구매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 피민원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귀하에게 비용청구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이는 바, 허위계산서의 발급 및 교부와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의 하자(착오, 사기, 강박)를 일으키거나 행위를 강요한 것과 관련된 분쟁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형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 민원센터(국번없이 182)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6. 공정거래법이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고, 공정거래법에 적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규제가 가능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고충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민원인이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피민원인이 현재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피민원인에게 향후 상품의 원산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를 표시하도록 엄중하게 주의촉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3-04055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상조 결합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귀하와 휴대폰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지만, 상조 결합상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함) 제23조에 따른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할부거래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할부계약의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 받아야 하므로, 우선 귀하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사업자로부터 계약체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5. 또한, 위 3.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참여-신고서식-선불식 할부거래 위반행위 신고서”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4층, 우편번호: 138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향후 할부계약 체결시에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신중히 살펴보시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시는 것이 좋겠고,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계약체결 시점에 미리 확인하시어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기간 내(일반 할부거래: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 등,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 등)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확인하시어 청약철회 하시고,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청약 철회에 관한 중재 또는 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7.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4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인과 유선상 통화한 결과 ① 레미콘의 경우 하도급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수급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② 계열사를 보유한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경우에는 개별(또는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중 어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③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해당 공장의 매출액만을 계상하는지 ④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질의 ①번과 관련하여, 레미콘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사업자의 요건 및 업(業)에 따른 위탁인지 여부 등 하도급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원·수급사업자를 판단하는 매출액 기준은 레미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1. 참고로 레미콘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법 대상이 됩니다.
4. 질의 ②번과 관련하여, 유선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연간매출액’이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또는 별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5. 질의 ③번과 관련하여, 사내하도급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에서는 ‘연간매출액’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이라 합니다)에서도 1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도 그 사업자의 매출액, 자산총액,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단순히 당해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여 계상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내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수급사업자의 요건 및 하도급거래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5-1. 참고로 우리 위원회 심결에서도 매출액을 산정할 때 당해 하도급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매출로 한정하거나 유상사급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재결 제2017-40호, 2017.4.24.)

6. 질의 ④번과 관련하여, 공정화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건설사업자 및 「전기공사업법」 상의 공사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를 상기 법령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를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으로 보고 있어 해당 경우에는 하도급법 대상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7.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8. 다만 위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 및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2203-065662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부속인 ‘비밀유지계약서’와 최근 배포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와 관련하여, 두가지 계약서를 혼합하여 일원화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와 두가지 계약서의 차이점 및 주 활용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아울러 배포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일부수정하여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부속인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주고받는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 제1조는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제1항은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조항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주고받는 비밀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경우 2022.2.18 시행되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따라 작성 및 권장되는 것으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1조는 “이 계약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한다.”, 제4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등 양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자료가 아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가 계약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부속인 비밀유지계약서’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적용대상에는 차이가 있으며,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경우 별첨 ‘1-1.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자료의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등을 고려했을 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부속인 비밀유지계약서’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혼합하여 서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현재로서는 곤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 한편 이번에 배포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배포된 것으로 비밀유지계약의 표준이 될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 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기본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는 등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주)케이티(이하 '피민원인')을 상대로 제기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께서 구 단말기 반납시 피민원인이 이를 즉시 반납조치하지 아니하여, 귀하께서 단말기 보상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였고, 이후 피민원인이 보상금액을 KT포인트로 지급하고자 안내한 점이 공정거래법 상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점, 피민원인의 단말기 반납·검수조치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보상금액이 KT포인트로 지급될 경우 기 지출된 167,223원의 현금상 손해가 발생, 피민원인의 검수지체로 인해 손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상 시정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가 운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기타의 거래강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법성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장려금 축소 등) 여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V.5.다. 참조)

아울러, 법 제45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은 거래상 지위의 존재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거래상 지위'의 존재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해 거래상대방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해 투자하여 고착화(Lock-in)현상이 발생하고,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 대체거래선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이어야 하며,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대법원2004. 7. 9. 선고 2002두11059 판결),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두6213 판결). 다만,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 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 해지, 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등의 해석에 대한 다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는 보상기기의 반납에 대한 보장금액을 반납 즉시 보상 받기를 원하였으나, 즉시 반납처리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단말기기를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 점 반면, 피민원인은 검수조치 후 반납결정이 되면 KT포인트로 지급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KT 갤럭시 노트10 5G 슈퍼체인지 정책을 따르면, 서비스 가입 24개월 후 사용 중인 갤럭시노트 10을 반납하고 새로운 기기변경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받는 서비스로 파악됩니다. 다만,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약관 제7조(보장금액의 지급)에 의하면 ‘가입자가 중고폰을 반납하면, 가입자는 즉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KT의 단말기 할인 또는 요금 할인 중 선택하여 보장금액을 제공한다(이하 생략)’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 약관 제6조 5.에 따르면 ‘중고폰 반납을 위해서는 기능 동작 및 외관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1차 검수 및 2차 검수후 가입자가 사후 판정을 통한 보상금액 확정을 원할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KT가 기기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 기간 동안 귀하의 신규 단말 기기의 할부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한 점, 이후 KT 포인트를 지급받는 경우, KT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한정(KT단말금 결제 및 KT 관련 할인혜택 등)되어 KT가 지정한 업체 및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어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신규 단말기의 할부로 기 지출된 현금의 손해 등 피민원인의 검수 지체로 인한 손해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상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피민원인의 서비스약관 및 귀하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귀하께서는 구 단말기 반납 즉시 KT포인트 등으로 단말기 할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피민원인은



구 단말기의 검수 조치 후 반납이 결정된 후 KT 포인트로 지급할 것을 설명하는바, 당사자간의 분쟁은 약관 제7조에 따른 중고폰 반납 시점에 대한 사항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중고폰 반납 시점에 대한 당사자간 계약 해석상의 다툼으로 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당사자간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따른 이행의무 지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규 단말기 구입 즉시 할부금액을 할인받지 못한 점, 할부로 기 지출된 현금이 아닌 KT포인트로 보상받아 귀하의 효용이 상실된 포인트로 단말기 할부 할인이 아닌 타 거래(이용요금 할인 등)를 이용하게 된 결과는 ‘반납 즉시’의 계약해석에 따라 발생한 부수적 효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 거래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 중단 등의 거래를 강제한 행위 및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 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모든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닌 점,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구성요건으로 인하여 귀하가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민원처리 관련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신청번호:1AA-2204-079694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게임서비스 사업자가 사업자의 약관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의거 특정 사업자가 현재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약관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심사하여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당해 약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약관의 통용을 방지함으로써 향후 계약을 체결하게 될 일반 다수의 계약상대방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약관의 심사를 통한 시정은 해당 약관 조항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심사는 ㉠약관조항의 문언자체에 불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약관조항은 제대로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자가 약관조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또는 ㉢약관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 경우인 해당 약관조항의 문언자체에 불공정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사업자의 약관조항의 문언자체의 불공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약관대로 이행했는지, 구체적 행위가 특정 약관조항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는 우리 위원회 약관심사 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게임서비스 관련 약관조항의 해석 및 적용, 이로 인한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를 원하시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1588-2594)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받으시거나,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4-0190931)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인 귀사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① ‘비회원’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 없는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② ‘비회원’ 대상 판매활동이 가능하다면 ‘비회원’ 대상 매출을 후원수당 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다단계판매로 정의(제2조)하고 있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습니다.
4. 민원 ①의 경우, 귀사의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지 아니하고 ‘비회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직접 판매 활동을 한다면, 해당 판매 부문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회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업자 신고 등 관련 의무사항을 확인·준수해야 할 것이고, 기타 다른 판매방식에 해당할 경우에도 소관 법률의 규정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5. 민원 ②의 경우,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직접 ‘비회원’에게 판매한 재화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후원수당 지급률 산정시 해당 매출액은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귀사는 다단계판매와 다단계 외의 판매를 병행하게 되는 것이기에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과 관련하여 판매 부문별로 매출회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5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5-028892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와 건설업자간의 도급계약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7항에서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건설위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례는 시행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고, 하도급법령상의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법 상 ‘건설위탁’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 위탁 등 하도급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해당 시행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한편, 다른 법률상 원자재 급등에 따른 법적 구제 방안이 있는지 등 하도급법 적용 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추가적으로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기업거래정책과에게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주유소의 가격이 동일한 것을 확인한바, 전남 순천시 주유소간의 가격 담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 사업자의 의사연락을 본질로 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외형상의 일치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주유소 사업자들 간의 업체이용 가격 담합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결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외형적인 가격의 일치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사업자들 간에 주고받은 합의서, 회의록, 수·발신평문, 이메일 등의 문서,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담겨 있는 녹음, 문자메시지, 증거를 촬영한 사진 등)”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아울러, 법 위반여부 조사가 피조사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사건 착수를 결정할 때에 담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전남 순천시 주유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으며 위반사항 발견을 위하여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포착되면 자료요청,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7. 답변내용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지방사무소 총괄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도미노피자 청주지역 6개 가맹점*이 ‘SKT 티데이 할인 프로모션’(이하 ‘프로모션’이라 함)에 참여하지 않아 담합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 청주 지역 7개 가맹점 중 오송점을 제외한 6개 가맹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거래조건, 거래지역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우리 위원회의 조사는 권력적 행정작용으로써 자유로운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인 반면 피조사대상에게는 침익적인 행위이므로 필요최소의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과정 등에서 기업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의 존재 여부 및 확보가능성, 법 위반 및 처분 가능성, 산업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여부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 5-1. 가맹점의 프로모션 참여 절차와 관련하여 도미노피자 본사에 확인한 결과, 할인 비용 중 일부는 가맹점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프로모션 참여 여부는 시행 월마다 가맹점에서 결정하며, 프로모션 제외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전 고지를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 5-2. 이에 도미노피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청주지역 도미노피자 가맹점 중 직전 3개월간 프로모션 미참여 업체는 1월 3개(가경점, 산남점, 용암점), 2월 3개(오창점, 가경점, 충북대점), 3월 5개(상당점, 가경점, 용암점, 충북대점, 오창점)로 보이며, 매월 참여 가맹점에 변동이 있다는 사실은 담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귀하께서 담합을 의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객관적인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간접적인 증거 없이 일시적인 거래조건(프로모션 미참여)의 외형상



일치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조사에 착수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라도 추가 제보가 있으시거나 답변내용에 보완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6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첫째,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는 전기공사업체가 사급자재를 구매하는 거래가 「하도급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위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먼저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위탁의 하도급거래는 기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인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사업자는 1)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을 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거나, 2) 중소기업 간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많은 중소기업자(단, 이 경우에도 연간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거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서 제외됨)여야 한다는 조건 등*을 만족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우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4. 한편 하도급법 제2조 제6항에 따르면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 물품의 판매, 물품의 수리 또는 건설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5호, 2015.10.23. 일부개정) “I. 2. 가”와 “I. 2. 나.”에 따르면 사업자가 건설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부품 또는 시설물로서 규격 또는 성능등을 지정한 도면,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가드레일, 표지판, 밸브, 갑문, 엘리베이터 등)” 또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로서 거래



관행상 별도의 시방서등의 첨부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레미콘, 아스콘 등)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합니다.

5. 이상의 규정들을 살펴볼 때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전기공사업체의 사급자재 구매 거래는 “경우에 따라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제조위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사급자재를 구매하는 전기공사업체가 i) 대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거나, ii) 중소기업일 경우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많음과 동시에 연간매출액이 30억 원(또는 시공능력 평가액 4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사급자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③ 마지막으로 사급자재가 건설공사에 소요·투입되는 자재로서 규격 또는 성능 등을 지정하여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 제작한 것이거나, 또는 거래관행상 별도의 시방서 등 첨부 없이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6. 제시해주신 내용의 전기공사업체의 사급자재 구매 거래가 이상의 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제조위탁의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되는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원사업자인 전기공사업체에게 발생할 것입니다.
7. 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6-0356183)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2. 우선 답변이 늦어진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은 “**예식업 분쟁해결기준상 총비용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귀하의 경우, 계약서 내 총비용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예식업 분야는 사업자/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등의 경우 계약금 환급, 총비용 일부 배상 등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식업 분야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위약금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총비용의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 아래 규정에 근거할 때 총 비용에는 식대가 포함되며, 총 비용 산정 시 부가세를 포함한 “실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 2) 다만, 본 기준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 통보를 하였다면 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또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3) 한편,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통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043-880-5500)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1AA-2207-0649726)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도면 등 기술자료를 다른 제3자 업체에게 주는 방식의 기술유용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의 적용이 어려운 바, 이러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 방해행위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와 그 외 다른 관련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우선 귀하께서 민원내용을 통해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제12조의3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령 별표 2의 사업활동 방해 항목 가목에서 기술의 부당이용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만약 대기업이 중견기업의 도면을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중견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사업활동에 방해가 끼쳤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한편 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사업활동 방해 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외의 법률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검찰, 경찰, 특허청이 주요 조사주체로서 주무부처가 다른 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는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4. 이상과 같이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다만 본 답변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구속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답변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에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제주도 주유소가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시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 사업자의 의사연락을 본질로 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외형상의 일치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주유소 사업자들 간의 업체이용 가격 담합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결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외형적인 가격의 일치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사업자들 간에 주고받은 합의서, 회의록, 수·발신 공문, 이메일 등의 문서,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담겨 있는 녹음, 문자메시지, 증거를 촬영한 사진 등)”를 통해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아울러, 법 위반여부 조사가 피조사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사건 착수를 결정할 때에 담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제주도 주유소 담합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반사항 발견을 위하여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포착되면 자료요청,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7. 답변내용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지방사무소 총괄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답변은 귀하의 질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7-048821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가 의무인지, 표시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증기간, 수리·교환·환불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 등에 표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 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별도의 보상방법을 마련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만일 이를 모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문구는 특정 문구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위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가령,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보상’ 등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5.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 발생 시 당사자간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규정(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함)에서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①표시·광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② 표시·광고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증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구매선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등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라고 함)로써 사업자들이 표시·광고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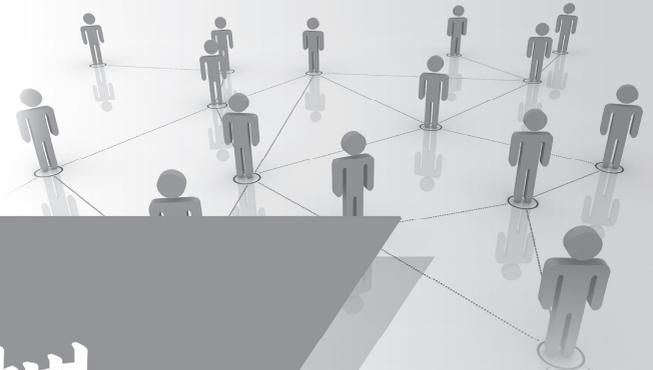
7. 중요정보고시에서는 일부 업종별로 반드시 표시 또는 광고해야 할 내용 및 표시장소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 업종, 소형전자제품 일부 업종 등에 대하여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정보고시에서 표시·광고하도록 정한 내용을 표시·광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판매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중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및 이들 식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질개선·체질감량 등 건강관련 관리·상담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프로그램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인 경우 표시 대상 중요정보 항목으로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부작용 발생 가능성(부작용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 때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인 경우 제품 자체, 포장용기(제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표시) 중 한 곳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환불·교환 가능여부 및 환불·교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는 경우 이에 따라 보상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9. 참고로 식품에 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식품의 표시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소형전자제품 중 휴대폰, 차량용 네비게이션, 노트북(태블릿)PC, 카메라,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을 운용하는 경우, 품질보증기준 또는 AS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르다는 사실 및 그 내용을 제품 포장용기에 표시하거나 별지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11.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 부품 보유기간, 수리·교환·환불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표시한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 등에 표시 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의무는 아니나, 개별법으로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 광고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정된 중요정보고시에서 교환 환불기준을 반드시 표시 광고하도록 정한 업종의 경우 교환환불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12. 소비자분쟁해결 및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관련 문의는 소비자안전정보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 문의사항은 소비자정책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8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신 질의(1AA-2208-0041323)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 전 견적서 제출 시('20.10.14.)에 그 전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물가 변동 3회('18~'19)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17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견적금액을 산출하여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상황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질의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급인 도급계약일자 : 2017.08.30일
- 2018~2019년까지 물가변동 총 3회(9.18%) 조정 받음
- 견적서 제출일자 : 2020.10.14일 (별도의 입찰진행은 없었음)
- 하도급 계약일자 : 2020.11.30일
- 현장설명서는 최종 하도급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되어있었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었으며, 하도급계약시, 이미 견적서 제출후 보았음)

2-1. 먼저, 질의와 관련하여 모든 위탁거래가 하도급법 규율 대상은 아니고 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원·수급사업자 요건 및 하도급거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3. 답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이 되려면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계약서나 특약에 설정하는 행위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 업체에게 떠넘기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 총 5가지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 시 부당한 특약 조항의 적용이 아닌 대금의 결정 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기에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가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의 위반이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한 원사업자와 귀 사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다음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함.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해당 여부 심사기준 :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그 내용, 수단·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 즉,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가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제4호에 따른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 : 하도급대금의 결정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고, 수급사업자를 속인 사실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4. 위의 답변내용은 민원내용에 드러나있지 않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5.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에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제품 소개 영상을 귀하가 운영하는 SNS 채널에 올릴 경우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사업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만적인 표시·광고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천·보증의 사실상 광고인지 또는 진실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추천·보증하면서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보증이라 함은 광고주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소비자가 광고주의 의견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천·보증심사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정명이나 프로필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광고주가 운영하는 계정임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별명을 활용한 제품·기념품을 직접 홍보하는 경우 등에는 광고주의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라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광고주가 아닌 제3자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 또는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A가 B회사의 사장, 임직원 등이라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A가 자신의 계정에 B사의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C회사가 자사 직원의 계정을 통해 자사 상품을 추천보증하였으나, C회사 직원이라는 사실을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운영하는 SNS의 계정명이나 프로필에 귀하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광고주가 운영하는 계정임을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임을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 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6. 위 답변내용이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0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9462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설회사에 대한 출자회사의 지배력 인정 여부 및 계열회사 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4조는 계열회사 판단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율 요건 또는 지배력 요건이 충족되는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되며,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상호 간에는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4. 지분율 요건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소속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등)가 단독으로 혹은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배력 요건은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대표 이사 또는 임원 50%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지, 동일인이 해당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 임원겸임이나 인사교류가 있는지, 기타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이를 바탕으로,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사례별로 신설회사와 출자회사(A,B,C,D사)의 지배력 인정 여부 및 계열회사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계열회사 판단 요건으로는 위 4.에서 설명한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 2가지가 있으며,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나. 우선 지분율 요건을 보면, 사례 1,2,3의 경우 모두 출자회사 중 신설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한 회사가 없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다. 다음으로 지배력 요건을 각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1의 경우, B사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선임권을 단독으로 가지므로 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가목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회사”에 해당하는바,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와 B사 간에는 계열회사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A, C, D사의 경우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시해주신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례2와 사례3의 경우, 대표이사 선임 시 외부추천인사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과반수 찬성 의결하는 방식이므로 대표이사가 선임되기 위해서는 7인의 이사 중 4인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바, A, B, C, D사 중 어느 회사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하여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회사의 지배적 영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외 지배력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임원겸임, 거래관계, 채무보증 등)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귀하께서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지배력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위 답변 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이며, 질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다르게 기재된 내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불가변동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ESC)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다 음 -

- 가. 도급계약일 : 2021. 11. 19. 도급착공일 : 2021. 11. 22.
 - 나. ESC 조정기준일 : 2022. 2. 28.(2021. 11. 19.~2022. 2. 28.)
 - 다. 하도급계약을 위한 전자입찰일 : 2021. 1. 11.
 - 라.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해 ESC를 적용해 줄 때, 전자입찰일부터 ESC 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즉, 48일분에 대한 ESC를 적용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16.(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다.에서는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전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기 가.(하도급대금의 조정 의무 발생)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ESC는 하도급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증액받은 내용과 비율 중 하도급계약일~ESC 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ESC 증액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함), 질의내용에는 하도급계약일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유권해석(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www.ftc.go.kr) → 정책/제도 → 기업거래정책 → 하도급정책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참고)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 유권해석 1(하도급계약일이 ESC 조정기준일보다 나중인 경우)

Q. 아래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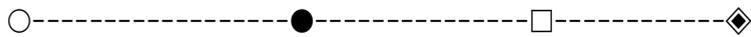
원도급입찰일(A) 원도급계약일(B) 하도급입찰일(C) 물가변동조정기준일(D) 하도급계약일(E)
(19.1.1,기준시점) (19.2.1) (19.2.10) (19.4.1,비교시점) (19.5.1)

A. 원칙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아니나, 하도급계약일 이전에 선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됨

- 수급사업자의 물가변동을 산출기간은 하도급위탁 후 즉, 하도급계약일부터 조정기준일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상으로는 ‘조정 기준시점’임)까지임
 - 따라서 위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므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가변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예외적으로 하도급계약 이전 선시공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원도급계약일(B)에 선시공을 하였다고 가정할 때 물가변동을 산출기간은 B-D구간이 됨

나. 유권해석 2(하도급계약일이 ESC 조정기준일보다 먼저인 경우)

Q. 아래와 같은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은?



원도급계약일(A) 하도급계약일(B) 물가변동조정기준일(C) 납품일
(18.10.1,기준시점) (19.1.1) (19.4.1,비교시점) (19.12.31)

<조건>

- ①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율 : 6%(A-C구간)
- ② 비교시점 이후 하도급 잔여공사분(물가변동적용대상금액) : 5억

A. 원칙적으로는 A-C구간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하나, 원사업자가 B-C구간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는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률을 적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야 하나,

* 5억(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6%(조정율) = 3천만원



- 원도급계약일과 하도급계약일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 원사업자가 A-B구간의 물가상승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원도급 계약일부터 하도급계약 시점(A-B구간)까지의 물가상승율을 공제 가능

- 5. (예외적으로)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입찰일에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는 경쟁입찰 방식인 경우에는 입찰일에 사실상 하도급거래(하도급대금 결정)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원사업자가 해당 하도급공사에 대해 증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해당 하도급공사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증액받았는지)에 따라 입찰일부터 ESC 조정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증액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제기간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예시 : 원사업자가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비추어 공제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하도급공사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증빙 등이 필요)

- 6. 참고로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1.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도급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원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관련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7.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에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우리 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보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전북 익산시 LPG 충전소 업체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시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다만,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 사업자의 의사연락을 본질로 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는 외형상의 일치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LPG 충전소 사업자들 간의 업체이용 가격 담합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가격결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외형적인 가격의 일치 외에도 “직·간접적인 증거(사업자들 간에 주고받은 합의서, 회의록, 수·발신 공문, 이메일 등의 문서, 당사자의 진술 등이 담겨 있는 녹음, 문자메시지, 증거를 촬영한 사진 등)”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아울러, 법 위반여부 조사가 피조사자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사건 착수를 결정할 때에 담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직·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LPG 충전소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반사항 발견을 위하여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포착되면 자료요청, 현장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7. 답변내용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주지방사무소 총괄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 방문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민원(신청번호 1AA-2209-0736693)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어린이제품 등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만료된 인증번호를 표시하거나 KC인증정보 등을 누락하는 경우, 개정된 고시에 저촉되는지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통신판매업자(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부족이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체결 전까지 상품 판매화면에 반드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종류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는 별도의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화면에도 인증·허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그 표시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낮은 해상도로 인증번호가 보이지 않는 인증서 사진만 게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근 고시를 개정(2022. 8. 3. 개정, 2023.1.1. 시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 고시는 KC 인증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는 상품(어린이제품 등)은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품 정보제공 고시(개정) > II. 일반원칙 > 6.)

* II. 6.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항목 중 KC 인증정보는 KC 마크와 식별부호(인증번호, 신고번호 등)를 함께 표시하고, 별도의 식별부호가 부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KC 마크 또는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 KC 인증이 면제된 품목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4. 상기 정보를 토대로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제품 판매 시, 온라인 상 만료된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개정 고시는 어린이제품, 생활화학제품과 같이 개별법에 따른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인증서·시험성적서 사진 등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표시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 인증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어린이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만료된 인허가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이는 법에서 정한 품목별 필수정보를 단순 누락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배되어 ‘시정명령’ 및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략)

2) KC 인증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이나,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해당 정보가 누락된 경우 문제가 되는지?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정보제공 고시 상 표시하여야 할 사항들을 소비자가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도록 상품 판매페이지 등 통신판매수단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KC인증정보 등을 표시해야 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다면 이는 법 제13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 2. (생략)
-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3. ~ 11. (생략)

3) 제품 실물의 표시사항과 판매 페이지 상 표시사항이 다른 경우 문제가 되는지?
 만일, 제품 실물에 표시되어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재고 순환 등으로 매번 유통기한이 상이한 경우 등)



상품 정보제공 고시 > II. 일반원칙 > 3. 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 실물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달리 기재하신다면 1)의 답변과 같은 사유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I. 3. 통신판매업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항목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귀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전자상거래법에 대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에 연락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1AA-2209-0902046)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주)에디르(이하 ‘피민원인’)가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하여 서울사무소 소비자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해당 답변 및 담당 부서의 응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귀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세세한 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지 혹은 소관 법률 및 심결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책임을 물을 만한 소극 행정행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의 소명,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담당 부서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를 검토한 결과, 피민원인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비방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인지 특정될 필요가 있어 이를 안내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부서는 피민원인에게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귀하께서 말씀하신 ‘센서 위치, 모양 및 뚜껑 커버에 붙은 플라스틱 조각까지 일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경우 자진 시정조치 이후 피민원인이 새롭게 추가한 부분으로, 귀하와의 통화 이후 담당 부서에서 특정 부분을 삭제하는 방식 등으로 시정조치하게끔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6. 이와 같은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법규 및 판례와 심결례,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달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조치가 있었다거나 업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담당 부서에 전달하며 민원 응대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당부 하였으니 너그러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담당관실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1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1AA-2210-097292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주)세일산업개발(이하 ‘피민원인’이라 함)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귀하와의 아파트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정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내용 등의 해석에 대한 다툼은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민사적 방법 등을 통해 별도로 해결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인지의 여부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심사기준 III.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판단기준 참조)

4.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귀하의 민원을 살펴본 결과, 해당 민원은 귀하와 피민원인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한 분쟁으로서 공정거래법을 직접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특히 피민원인의 매출액이 2021년 기준 386억원으로 광주지역 1~3위 임대사업자의 매출액(4405억, 3591억, 3160억)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서 경쟁 사업자들과 비교시 시장점유율 및 자금력이 미미한 점,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효하게 완료한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임대사업시장의 신규진입이 용이한 바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이 미미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때, 피민원인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5. 한편 귀하의 민원취지가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과 관련있는 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 ☎062-710-3430)가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6. 귀하께서 해당 민원을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통해서 해결해보고자 하셨으나 해당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넣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요건이 엄격하여 귀하의 민원을 공정위에서 직접 해결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2210-0863959)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사 A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사 B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공정거래법 상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A사는 주식 소유 외 다른 사업이 없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되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님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국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4. 다만, 같은 조항 단서 1~3호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1호), 보험업법 등 승인에 따른 경우(2호), 국내 상장 계열사의 주총에서 임원 선임 등 특정 안건을 결의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 한도 내(3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37조 제1항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의내용 상 A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로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보이는데, 단서 1~2호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닌 한(B사가 비상장사라고 하였으므로 3호 단서는 해당 없을 것으로 판단), A사는 국내 계열사인 B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기 답변은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이며, 질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 등이 있을 경우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대전사무소 소비자과가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건을 민원회신으로 답변하면서 처리결과를 사건처리절차 제20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 처리가 귀하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세세한 답변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지 혹은 소관 법률 및 심결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책임을 물을 만한 소극 행정행위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의 소명, 관련 규정 등을 토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우선,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담당과에서는 소명서 등을 통해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령 및 규정, 심결 및 판례 등을 통해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사건절차 규칙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되어 민원으로 검토한 후 자동SMS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답변드렸다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6.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한 결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에 따르면 전자문서가 ①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②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소속 공무원이 공정위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위반 혐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심사청구가 위 사건절차규칙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 및 사유를 문서 등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사무소 담당자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귀하의 민원건에 대하여 자동SMS 발송 혹은 국민신문고에서 정한 홈페이지 게시방법을 통해 회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귀하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의 응대태도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엄중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귀하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담당자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귀하께 불편함과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이와 같은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 과정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법규 및 판례와 심결례,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달리 관련 법규를 위반한 조치가 있었다거나 업무태만 등의 소극 행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8. 이와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2210-091553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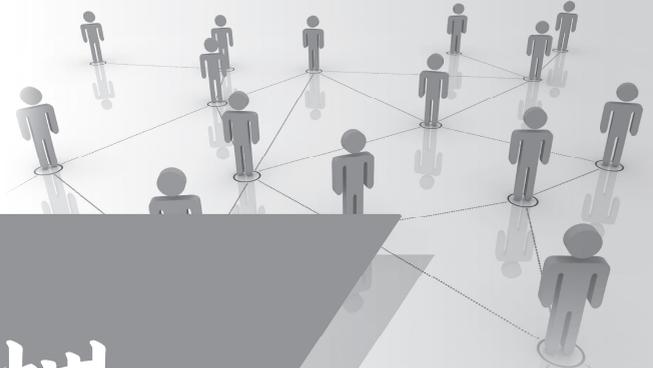
2. 귀하께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함) 제1조~제3조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나, 질의하신 바가 명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법령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먼저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개별 사업자가 명문으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 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 지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심사하여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장래 새롭게 체결하는 계약부터 이를 시정(수정 및 삭제 등)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약관의 심사를 통한 시정은 해당 약관 조항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미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관계를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약관법 제3조는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약관법 제3조에 의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의 고지 여부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개별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므로 궁극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2월 모범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2-036088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업집단 성립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선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합니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11호)

나. 기업집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회사란 상법상 회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뜻합니다.(상법 제169조)

다. (첫번째 질의)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1개의 법인만 존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며,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범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지분율 요건)와 같은 조 제2호(지배력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둘 이상의 회사가 각각 두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회사들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며, 각 회사들은 그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됩니다.

마. 여기서 지분율 요건이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나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등의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특정회사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고 최대 출자자인 경우 충족되며, 지배력 요건은 특정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충족됩니다.

바. (두번째 질의) 문의 주신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 요건을 충족시켜 두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소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두 회사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시해주신 상황만으로는 계열회사로의 편입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위의 답변 내용은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이며, 질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다르게 기재된 내용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691950)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HP의 무상수리기간 도과 후 AS 정책, 이른바 ‘장치교환정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담당자(이하 ‘담당자’라고 함)의 답변이 부당하므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위원회 직원의 업무처리 및 답변이 민원인께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세부적인 답변에 앞서, ‘소극행정신고’로 접수된 민원은 관련 처리절차에 따라 귀하의 민원·사건을 처리했던 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게 되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지, 소관 법률 및 심결례 등에 비추어 책임을 부과할 만한 소극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기타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 및 담당자의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에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2022.9.27. 신청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209-0915163)은 2022. 9. 28. 공정거래위원회 서울 소비자과에 접수되었고, 담당자는 피민원인 HP가 전자상거래시 장치교환정책을 미리 고시하지 않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2. 11. 18. 답변하였음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피민원인 및 참고인 소명,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치교환정책은 2017년 이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도입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품의 고장 발생시에만 기술적인 수리 가능성 여부로 인해 적용되는 정책이며, 장치교환시 80% 가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여 그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며 장치교환 후 3개월 이내 보증기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유상수리 후 보증기간(2개월)보다 유리한 조건이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항이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련 법령, 심결례, 담당자의 민원처리 경위 및 소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담당자가 동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를 행하였다거나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웠음을 알려드립니다.

6. 다시 한번 귀하께서 본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1.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①법정 후원수당 지급 상한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내 매출에 의한 후원수당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②해외 매출로 인해 해외 본사로부터 국내 판매원이 지급받은 후원수당도 100분의 35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국내 특정 지역에 회의 및 교육장소로 본사 직원을 파견하여 직영센터(본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를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도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및 사업 권유거래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제9호에서는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 실적,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그 밖에 ㉤목부터 ㉥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3항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민원의 내용과 위에서 검토한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①법정 후원수당 지급 상한 금액 100분의 35 산정시 분모에 해당하는 가격합계액(총매출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해외에서 발생한 매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국내 다단계판매업자의 해외 지사 수출로 인해 발생한 매출 실적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한 실적은 아니므로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합계액(총매출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②국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후원수당을 해외 본사(또는 지사)가 국내 다단계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해당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상한 100분의 35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③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다단계판매원이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직영센터의 운영비(보증금 및 임차료 등)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인 후원수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상의 답변 내용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기타 방문 판매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에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는 터널 발파패턴 변경으로 굴착공사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규단가로 물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서는 원사업자가 건설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목적물 등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항에서는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 (1.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간 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어야 하며, 증액받지 못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에 따른 증액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는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협의의무(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됨)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내용(조정 비율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발주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분야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www.ftc.go.kr) → 정책/제도 → 기업거래정책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5. 본 답변은 귀하의 질의내용에 기초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우리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에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